

공지사항

식에 의한 수탁가공 전략물자 수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 3조 제 1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상공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수탁가공 계약서

2. 매뉴얼, 카탈로그 또는 사양서 등 수출품의 성능과 용도를 나타내는 서류 중 하나

3. 별지 제 13호 서식에 의한 위탁자의 최종 수하인 진술서

4. 수출자의 전략물자 관리 서약서

④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가공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은 자는 반기별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수출허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략물자의 생산 수출실적

2. 위탁자가 공급하는 원자재가 전략물자인 경우 당해 원자재의 수입실적

⑥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가공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은 자는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한 수출승인을 신청할 경우 상공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수탁가공 전략물자 수출승인 기록부를 작성하여 수출승인 신청시 마다 수출입 승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22조에 단서를 신설하고 동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2조(수입증명서 제출의 면제) 수출허가기관의 장은 제 3조 제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나」지역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고자 할 때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입증명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 3호 내지 제 6호의 경우에는 「다」지역으로의 수출에도 이를 적용한다.

1-2호 : 현행과 같음

3. 외국에서 수리한 후 재반입 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4. 전시회 등에 참가하기 위하여 일시 반출하는 경우

5. 선박 또는 항공회사가 외국의 지사에게 자

사의 항공기 또는 선박의 수리용 부품 및 부분품을 수출하는 경우

6. 수입한 전략물자를 불량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수출자에 반송하는 경우

전략물자 수출입공고 별지 제 11, 제 12 및 제 1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규 제정한다.

별지 서식 : 별지와 같음(생략)

전략물자 수출입공고 별표2의 전략물자의 규격과 성능 중 제1부 산업용물자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별표 2 전략물자의 규격과 성능중 개정안 : 별첨과 같음(생략)

※세부 개정 내용 및 품목에 대해서는 상공부 자원부 무역협력과(504-4148) 또는 본회 무역과(554-6739)로 문의 바랍니다.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 개정(안) 배경〉

1. 개정 필요성

'93. 10월 COCOM의 결정에 의하여 개정된 통제대상 전략물자를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입공고에 반영하고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 수출허가절차 개선 및 구비서류 간소화

2. 개정(안) 주요골자

가. 통제대상 전략물자의 축소 및 통제기준 완화

◦ COCON의 결정에 의하여 통제해제 또는 완화가 결정된 품목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기 위하여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상 전략물자 목록을 개정

— 통제대상에서 삭제된 품목 : 2개 품목

(다가능 집중이온빔형 반도체 제조장비, 전기통신용 디지털 신호처리장비)

— 통제기준이 완화된 품목 : 19개 품목

(반도체, 컴퓨터 보조기억장치 등)

— 행정예외 또는 우호적고려 조항이 완화되거나 신설된 품목 : 123개 품목

(전기통신용, 모뎀, 무선장비, 컴퓨터 등)

공지사항

분야별 통제대상 전략물자의 축소 및 기준완화 품목수

구분	전체 품목수	통제품목 완화		기타완화 사항	
		통제대상 삭제	통제기준 완화	행정예외 확대	우호적고려 확대
신소재	30	-	-	30	30
소재가공	29	-	-	27	27
전자	27	1	7	1	1
컴퓨터	8	-	2	2	1
전기통신	23	1	3	-	-
센서	31	-	6	20	6
합법및합법	9	-	-	8	8
전자공학					
해양기술	19	-	-	19	19
추진장치	19	-	1	7	7
계	195 (100.0)	2 (1%)	19 (10%)	114 (58.4%)	99 (50.7%)

*우호적 고려중 90개 품목은 행정예외와 중복

나. 수출허가 절차의 개선 및 구비서류 간소화

행정예외 및 우호적 고려에 의한 수출허가(제4조)

- 현행
 - 명시적 규정없이 품목리스트에만 규정
 - 개정
 - 행정예외 대상 품목은 행정예외 조건에 합치될 경우 허가할 수 있음을 명백히 규정
 - 우호적고려 대상품목은 민감도가 낮은 경우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간소화
- *우호적고려 대상품목은 COCOM의 동의를 얻어야 수출허가가 가능하나, 민감도가 낮은 품목의 경우 우리정부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미측과 교섭, 미측의 양해를 얻은 바 있음('93. 10. 동경세미나)

포괄 수출허가 신청시 첨부서류의 간소화(제12조)

- 현행
 - 외국의 수입자의 주문에 따라 수출자가 지정하는 제3국의 수하인에게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경우 수입자와 최종수하인의 진술서를 모두 첨부

- 개정
 - 외국의 수입자의 진술서와 계약서를 첨부하여 수출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간소화함

수탁가공 수출허가제도의 신설(제 17조의 2)

- 현행
 - 외국기업과 수탁가공 계약을 맺은 기업으로서 원·부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받아가동·조립한 후 수출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선적시마다 수출허가를 받아야 함

- 개정안
 - 수탁가공계약을 맺은 업체가 계약기간내에 가공품을 수출하는 경우 계약을 범위내에서 포괄적으로 수출을 허가할 수 있음

-수탁가공 수출허가 대상 : 수탁가공계약을 체결한 기업

- 허가 요건 및 첨부서류
 - 수탁가공 계약서
 - 외국의 위탁자가 서명한 수하인 진술서
 - 우리나라 수탁자의 서약서
- 허가의 효과
 - 수탁가공 계약 기간내에 외국의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외국의 수입자에게 수출하는 계약물품에 대하여 일괄하여 수출을 허가함
- 허가의 조건
 - 공급받은 원·부자재 및 생산제품의 관리의무이행
 - 분기별 수출실적 보고

수입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의 확대(제22조)

- 현행
 - 정부 또는 대학 등에 수출하는 경우 : 「나」 지역 국가만 적용

공지사항

품비용의 80% 범위 내(대기업 제외)

-년 2개 부스(한 전시회당 1인 1부스 1건에 한함)에 한하며 통역비는 출품건당 10만원 이내

-개인 및 중소기업자의 출품비용이 예산액을 초과시, 개인에게 우선 교부하고 잔액을 중소기업자에게 배분조정

◦ 전시회에 출품하여 수상한 발명품은 전국우수발명전시회 및 발명장려관에 전시토록 함.

JCCI '94 논문모집 안내

대한전자공학회의 통신연구회와 전자교환연구회, 한국통신학회의 데이터통신연구회, 교환연구회, 위성통신연구회, 이동통신연구회, 한국통신정보보호학회의 통신 및 네트워크 보호부문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4회 합동학술대회를 1994년 4월 28일, 29일, 30일, 3일간 강원도 춘천에서 개최합니다.

이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연구논문을 공모하오니, 아래의 절차를 참조하여 투고하시기 바랍니다.

1. 논문제출 절차

먼저 논문의 요약문을 논문투고 분야를 명시하여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학술위원회가 논문발표 승인여부를 심사통보합니다.

본학술대회에의 논문 발표가 승인되는 경우, 필히 논문을 제출해야 하며, 또한 당일에는 논문발표를 꼭 해야만 합니다.

(1) 논문요약문(800단어 이상) 및 설문지제출 : 19994년 1월 22일까지

(2) 심사결과 통보 : 19994년 2월 28일까지

(3) 사진복사가능한 5쪽이내의 논문제출 : 1994년 4월 1일까지

2. 요약문 및 논문제출처

121-742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1번지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홍대형 교수
전화 : (02) 705-8470, Fax : (02) 706-4216

3. 논문투고 분야

정보통신, 통신이론, 전송, 교환, 통신망, ATM/ISDN, 위성통신, 이동통신, 개인휴대통신, 통신정보보호, 통신신호처리, 고속프로타콜, 통신소프트웨어, 무선데이터 등 통신 및 정보분야 전반

국민 건강 생활 지침 안내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건강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질병예방과 건강생활을 위한 생활양식의 변화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건사회부에서는 보건교육사업의 일환으로 현시대에 알맞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하여 국민모두가 기본적으로 실천이 가능하며 생활화, 습관화 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지침"을 만들어 평소 국민 각자가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건강실천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사 전직원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생활지침>

1. 청결을 생활화 합시다.
2. 음식은 싱겁고 가볍게 골고루 먹읍시다.
3. 예방접종과 건강진단은 때 맞추어 받읍시다.
4. 과음하지 말고 담배는 피우지 맙시다.
5. 규칙적인 운동으로 신체의 활력을 유지합시다.
6. 일하며 보람찾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7. 공공질서 지키며 안전사고를 예방합시다.
8. 아껴쓰고 적게 버려 건강한 환경을 만듭시다.

